

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7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“한부모가족지원센터”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, 자녀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
- 나. 한부모가족 사업의 전문성, 경험, 인적·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
- 나. 위탁기간 : 3년(2022.1.1. ~ 2024.12.31.)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(운영의 위탁)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 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한부모가족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,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 운용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위탁 추진 필요

- 라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
- 한부모가족 대상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
 -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
 - 한부모가족 지원관련 기관·단체와의 서비스 연계
 - 그 밖에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

마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75, 4층
- 규모 : 전용면적 385.75㎡
- 시설현황 : 상담실, 보육실, 교육실, 자조모임실, 사무실 등
- 인력현황 : 10명(센터장 1명, 사무국장 1명, 팀장 2명, 팀원 6명)
- 개소일 : 2009. 2. 1.

바. 수탁기간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: 금1,608,087천원('21년 예산)

- 사무관리비 : 50,000천원
- 민간위탁금 : 1,493,087천원
- 민간위탁사업비 : 65,000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(운영의 위탁)

제13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)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가족담당관 가족정책팀 윤나영 (☎ 2133-5163)